



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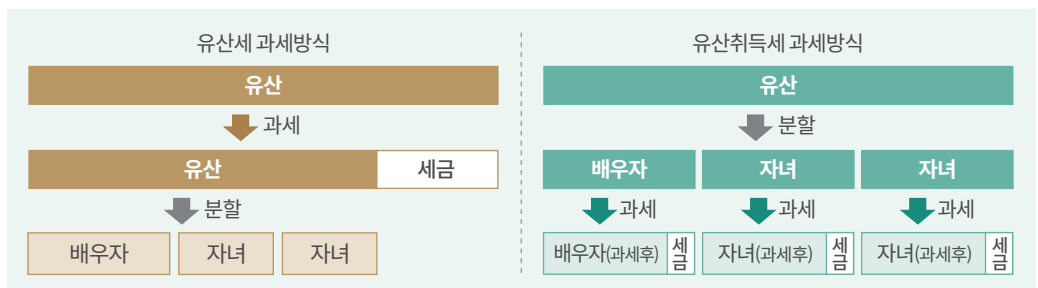
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최천규 분석관

상속세의 과세방식

▪ 상속세 과세방식은 과세기준에 따라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구분

- 유산세방식: 피상속인¹⁾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
- 유산취득세방식: 상속인²⁾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

[그림 1] 상속세 과세방식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4 대한민국 조세」, 2024

▪ OECD 상속세 부과 24개 국가 중 유산세방식 4개국, 유산취득세방식 20개국

-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유산세방식을 유지 중
- 대부분의 국가는 과세방식 전환이 없으나, 일본의 경우 1950년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, 1958년 다시 법정상속분 과세방식³⁾으로 전환
 - 일본은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절충형인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이지만, 국제적으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분류

[표 1] 상속세 시행 OECD 국가의 과세방식 현황

유산세방식 국가	유산취득세방식 국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, 미국, 영국, 덴마크 (4개국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벨기에, 칠레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일본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위스, 튀르키예 (20개국)

자료: IBFD - Tax Research Platform 국가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▪ 유산세방식 국가와 유산취득세방식 국가의 주요 공제 현황

- 유산세방식 국가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두고 있으며, 우리나라를 제외한 3개국은 배우자 상속 면제
- 유산취득세방식 국가는 상속인 취득자산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기초공제 없이 상속인별 배우자(면제포함)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공제제도를 운용

1) 피상속인(사망자)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며,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
 2)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
 3)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인의 세액을 산정한 후 총세액(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인 세액의 합)을 실제 상속인의 받은 상속재산비율로 안분하여 부과



[표 2] 주요 국가의 상속세 인적공제 등 현황

과세방식	국가명	공제액
유산세방식	미국	• 기초공제액(통합세액공제): 1,399만달러(약 203억 507만원) • 배우자 면제
	영국	• 기초공제: 32만 5천파운드(약 6억 1,301만원) • 배우자 면제, 자녀 주택상속: 17만 5천파운드(약 3억 3,008만원)
	덴마크	• 기초공제: 346,000크로네(kroner)(약 7,383만원) • 배우자 면제
	한국	• 기초공제: 2억원, 일괄공제 5억원 • 배우자공제: 5~30억원, 자녀공제: 1인당 5천만원
유산취득세방식	독일	• 배우자: 50만유로(약 7억 9,377만원) • 자녀: 40만유로(약 6억 3,502만원) • 손자녀: 20만유로(약 3억 1,751만원)
	프랑스	• 배우자 면제 • 직계가족: 10만유로(약 1억 5,875만원)
	이탈리아	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: 100만유로(약 15억 8,754만원)
	스페인	• 배우자 및 13세 이상 직계자녀: 15,956유로(약 2,534만원) • 13세 미만 직계자녀: 47,858유로(약 7,598만원)
	네덜란드	• 배우자: 804,698유로(약 12억 8,090만원) • 미성년 자녀: 25,490유로(약 4,057만원)
	일본	• 기초공제액: 3,000만엔(약 2억 9,138만원) + [600만엔 (약 5,828만원) × 법정상속인 수] • 배우자공제: 1억 6천만엔(약 15억 5,402만원) 또는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

주: 1. 2025. 3. 19. 매매기준환율 기준

2. 일본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절충형(법정상속분과세방식)으로 기초공제 있음

자료: IBFD - Tax Research Platform 국가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■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비교

- 유산세방식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, 세무행정부담이 낮음
- 유산취득세방식은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나,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음

[표 3]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비교

구분	유산세방식	유산취득세방식
응능부담	• 낮음 - 상속인의 담세력과 무관	• 높음 - 상속인 담세력에 상응
부의 집중억제	• 낮음 - 유산분할을 촉진할 유인이 없음	• 높음 - 상속인 수 비례에 따른 세부담 감소로 유산분할 촉진
세수와의 관계	• 상대적으로 세수증대효과 높음 - 유산분할과 무관한 총유산 전체 세액	• 상대적으로 세수증대효과 낮음 - 유산분할이 많을수록 세액 감소
세무행정 부담	• 상대적으로 낮음 - 피상속인 유산만 조사·결정	• 상대적으로 높음 - 모든 상속인과 그 취득자산을 조사·결정

자료: 나성길 외 2인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」, 삼일인포마인, 2024.

정부의 상속세 과세방식 개편안

▪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 발표('28년 시행 목표)

- (주요 내용) 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인적공제 조정 등
 -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

[표 4]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과세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

항 목	개편안 내용
배우자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현행) 5억원(최저) ~ min(법정상속분, 30억원) → (개편안) 실제상속분* ~ min(법정상속분, 30억원) *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 실제 상속분 인정
기타 인적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계존비속: (개편안) 5억원 • 직계존비속 이외: (개편안) 2억원 * 미성년공제, 장애인공제, 연로자공제(직계비속은 연로자공제 제외)는 현행과 동일
인적공제 최저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설)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합계액 10억원까지 추가공제
조세회피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 연장: (현행) 10년 → (개편안) 15년 * 위장분할: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게 분할 •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: 상속재산 30억원 이상,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증여를 통한 우회상속으로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 * 우회상속: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액 과세

자료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유산취득세 도입방안, 2025.3.12.)

과세방식 전환 시나리오별 실효세율 분석

▪ 과세방식 전환시 상속재산별 실효세율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

- 상속인의 인적구성,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공제 등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분석

• 상속인	배우자 + 자녀 1~4명
• 상속액	법정상속분(배우자 1.5, 자녀 1)
• 상속재산	시나리오별로 10~500억원
• 상속공제	(현행) 일괄공제(5억원), 배우자공제(5~30억원), 그 이외 공제 적용 없음 (개편안) 자녀공제(5억원), 배우자공제(실제상속분~30억원), 그 이외 공제 적용 없음
• 세 율	현행 세율
• 세 액	산출세액(세액공제 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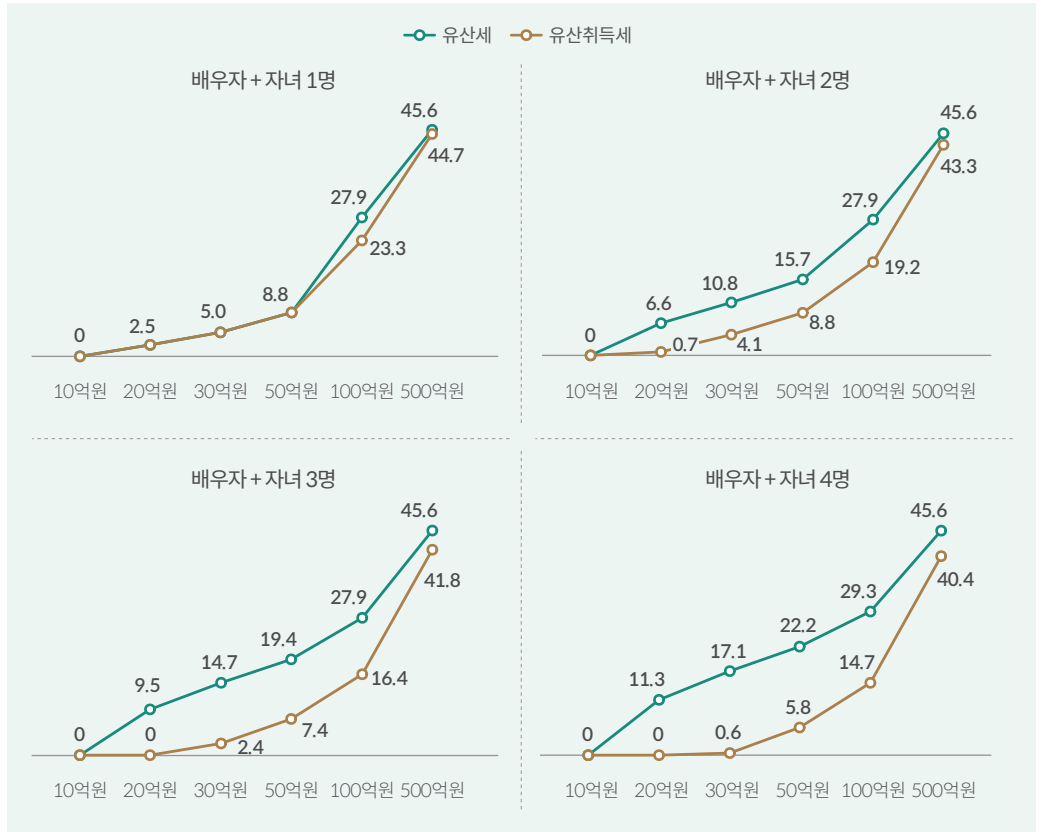
▪ 분석결과, 과세방식 전환시 시나리오의 상속재산 분산 정도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방식에 비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

- 과세방식 전환시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 등의 상속인 수가 증가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산으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확대
 -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사례의 경우 실효세율 변화가 $\Delta 0.9\%p \sim \Delta 4.6\%p$ 이나, 배우자와 자녀 4명인 사례의 경우 실효세율 변화가 $\Delta 5.2\%p \sim \Delta 16.5\%p$ 으로 확대⁴⁾

4) 실제 가구별 상속재산 분배 비율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

[그림 2] 시나리오별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실효세율 변화

(단위: %)



주: 실효세율 = 산출세액/상속재산가액

향후 논의 과제

■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대한 찬·반의견 상존

-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찬성측 의견은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담세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고, 현행 증여세와의 과세 기준 일치로 인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음⁵⁾
 -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 결과: 일반국민 71.5%, 전문가 79.4%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⁶⁾
- 반대측 의견은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에 따라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약화로 인한 자산불평등 심화와 세수 감소로 인해 국가재정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⁷⁾

■ 조세회피방지 및 조세행정 대응방안 논의 필요

- 정부의 조세회피 대응 방안(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 연장, 우회상속 비교과세) 외에도 제도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 유산취득세하에서 세액확정, 과세관할 등 조세행정도 누수가 없도록 대비할 필요⁸⁾

5) 임동원, "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", KERI Brief, 한국경제연구원, 2022. 6.

6)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유산취득세 도입방안, 2025.3.12.)

7) 참여연대 보도자료(세수감소 초래할 유산취득세 전환은 초부자 감세에 불과, 2025.3.12.)

8) 정훈 외 2인, 「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조세행정 비교 연구」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23. 7. 참조